

우송체육센터운영규정

제 정	1996. 3.
개 정	1998. 9.
개 정	2012. 7.

제 1장 총 칙

제1조 (적용.목적)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의 시설물인 우송체육센터(이하 “체육 센터”라 한다)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주관부서) 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은 학생복지처에서 관장한다. 다만, 시설물의 관리에 관하여는 총무처의 지원을 받는다.

제3조 (사회체육프로그램 운영) 체육센터를 중심으로 사회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

제 2장 관리기구

제4조 (관리조직) 체육센터의 관리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
1. 관장: 1명
2. 전담직원 및 시설관리인: 약간명
3. 관리운영학생: 약간명

제5조 (관장) ①관장은 본 대학 학생복지처장으로 한다.

②관장은 체육센터의 관리.운영.대여 등에 관한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, 이에 수반되는 직무를 통괄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1. 체육관련 실기 수업 및 활동을 위한 체육관 사용기간 배정
2. 체육회원 특별활동을 위한 체육관 사용기간 배정
3. 체육관의 내외부 시설과 건물의 보수.확충에 관한 사항
4. 체육관 내외부 시설.건물의 사용 및 사용대여에 관한 사항

제6조 (위원) 관장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 3장 사용기준

제7조 (사용원칙) 체육센터는 본교 재학생의 체육수업과 각종 운동부 및 체육회원의 체력훈련, 그리고 교직원 및 재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8조 (사용순위) 체육센터 사용의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.

1. 재학생의 수업을 위한 사용
2. 체육회원 및 각 운동부의 훈련을 위한 사용

- 3. 본교의 각종 행사 및 교직원 체육활동을 위한 사용
- 4. 학생들의 개별행사 및 연습을 위한 사용
- 5. 외부 유관기관의 행사 등을 위한 사용

제 4장 사용자 준수사항

제9조 (준수사항) 체육센터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- 1. 경기장 출입시 운동복 및 운동화 착용
- 2. 금연.금주
- 3. 시설물.비품.장비 등 훼손주의
- 4. 체육관내 질서유지
- 5. 기타 본교에서 지시하는 사항

제10조 (사용중지.취소) 관장은 체육센터를 사용하는 자가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시설관리 및 질서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체육센터의 사용을 중지시키거나 사용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.

제 5장 사용절차

제11조 (대관기준) ①체육센터의 대여는 교육.체육.문화 등에 관계되고 학교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행사에 한하여 대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외부기관 및 지역행사의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대관한다.

제12조 (사용신청) 체육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목적.사용일시.참석인원.신청대표자 등을 기록한 소정의 사용신청서를 학생복지처에 사용 10일 전에 제출.신청하여야 한다.

제13조 (사용승인) 관장은 행사계획서 및 시설물이용신청서를 확인.검토하여 체육센터 사용을 허가한다.

제14조 (사용승인 정지.취소) 관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체육센터 사용승인을 정지 또는 취소한다.

- 1. 사용승인 신청시의 목적과 달리 사용할 때
- 2.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

제15조 (손해배상) ①사용자는 건물.시설물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②사용자는 건물.시설물.부속물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일체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.

제16조 (관리.보수) 체육센터의 건물.시설 등의 보수에 관계되는 사항은 행정지원처 시설팀에서 담당한다.

제17조 (기타)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 시설물사용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.